



제418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 운용 주체에 해양경찰청 추가〉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9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 고】 해양경찰청 성범죄 처리 현황('18년~'23년)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고(안 제26조제2항),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생략) ② <u>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u> ③ (생략)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현행과 같음) ② <u>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u> ----- ----- ----- -----.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 <u>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u> ”으로 본다.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u> .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함)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26조¹⁾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각각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제33조²⁾는 법원이 피해자 등의 정신·심리 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수사기관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해양경찰청장은 전담조사제와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의 운용 주체가 아님.

1) 「성폭력처벌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 한편, 해양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해양경찰청 훈령)에 근거³⁾하여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를 운용해 오고 있으나, 동 훈령이 전부개정(2021. 1. 1.)되면서 현재는 전담조사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법률상 피해자 전담조사제와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의 운용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일반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해양 관련 성폭력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해양경찰의 직무, 해양 관련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44조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해양경찰법」 제14조⁵⁾에 따라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⁶⁾

3) 해양경찰청 훈령 제209호로 전부개정(2021.1.1.)되기 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6조(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의 조사)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

4) 「정부조직법」 제44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5)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6)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1996.8.8.)으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 이후,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또한, 「형사소송법」 7) 및 「경찰공무원법」 등8)에 따라 경찰청과 함께 일반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9)의 적용을 받으며 경찰청과 수사관할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 관련 범죄10)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므로, 해양 관련 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수사 주체는 해양경찰청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해양경찰청이 수사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수사하는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해양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전담조사제와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를

(2014.11.19.)으로 해양경찰청 업무를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 소관으로 하였다가,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17.7.26.)으로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다시 신설되어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됨.

7)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8) 「경찰공무원법」

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중간 생략)

경무관(警務官)

(중간 생략)

순경(巡警)

「해양경찰법」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10) ①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② 해양에서 발생하여 육상으로 이어지는 범죄, ③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이어지는 범죄, ④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담조사제의 일환으로 현행법 제26조제3항·제4항¹¹⁾은 국가가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및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담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제4항 단서¹²⁾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등인 경우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해양 관련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073

11) 각주 1) 참조

12) 각주 2) 참조

【참 고】 해양경찰청 성범죄 처리 현황(18년~23년)

<연도별 현황>

구 분	발 생	검 거		처 리(명)	
		건 수	인 원(명)	구 속	불구속
계	221	217	82	5	77
'23년	28	26	26	-	26
'22년	18	18	15	-	15
'21년	141	139	6	3	3
'20년	15	15	14	-	14
'19년	8	8	10	-	10
'18년	11	11	11	2	9

* 자료 : 해양경찰청

<유형(죄명)별 현황>

구 분	발 생	검 거		처 리(명)	
		건 수	인 원(명)	구 속	불구속
계	221	217	82	5	77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40	140	6	-	6
강제추행(준·상습)	48	45	45	2	43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4	4	1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1	1	-	1
청소년 강간 등	1	1	3	-	3
공중밀집장소 추행	8	8	9	1	8
성폭력처벌법위반	2	1	3	-	3
업무상위력 등 추행	11	11	8	1	7
피보호자(피감호자)간음(상습)	1	1	1	-	1
강간치상(준)	1	1	1	-	1
주거침입 강간 등	3	3	3	1	2
강간미수	1	1	1	-	1

* 자료 : 해양경찰청